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5시 56분



목차

목차	2
건설기계등록	3
기본사항	3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	3
민원관련 참고사항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신규등록 ▪ 이전/변경등록 ▪ **말소등록** ▪ 저당권설정등록 ▪ 저당권말소등록 ▪ 등록번호표재발급
- 등록증재교부 ▪ 등록원부발급

기본사항

-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함.
- 도난말소 = 도난 신고일로 부터 2개월이내
- 수출말소의 경우는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반드시 수출이행여부신고해야함.

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

- 등록말소신청서
- 건설기계등록증
- 말소사유서
 - > 폐기일 경우(폐기인수증)
 - > 도난일 경우(경찰서의 도난사실 확인서)
 - > 수출일 경우(무역업자 사업자사본, 인보이스, 패킹리스트, 등록번호판)
 - > 멸실된 경우(재난 또는 재해신고서)
-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
-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
-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업체의 말소등록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

민원관련 참고사항

-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

Yeosu Web Contents

